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12

발의연월일: 2021. 2. 8.

발 의 자 : 태영호·양금희·김태호

이종배 · 송언석 · 허은아

김정재 · 조경태 · 박성중

서정숙・조수진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을 수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당한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하더 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 환 조치하여야 함. 최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된 주인이 5일 동안 격리되었던 강아지를 돌려받기 도 하였음.

한편,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상담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를 교화하는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학

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동물의 소유권 상실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학대 동물을 격리한 경우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소유권등"이라 한다)의 상실 또는 제한의 선 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반복적 학대의 위험 방지 등 피학대 동물의 생명,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 ③ 학대행위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을 이유로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제2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경우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2(동물의 소유권 상실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
	<u>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u>
	따라 피학대 동물을 격리한 경
	우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이
	하 이 조에서 "소유권등"이라
	한다)의 상실 또는 제한의 선
	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
	가 있는 경우 반복적 학대의
	위험 방지 등 피학대 동물의
	생명,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u>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u>
	<u>있다.</u>
	③ 학대행위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
	에 대한 소유권등을 이유로 동
	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 조 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신 설>

제:	203	조(동	물	의	소	유	권	취	득) -	

- 1. ~ 3. (현행과 같음)
- 3의2.제14조의2제2항에따라법원이학대행위자의해당동물에대한소유권의상실을선고하는경우
- 4.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학대행위자에 대한 상 담・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 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교육 또는 심 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